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
(기획예산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97호
- 나. 제출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,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구의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일몰의 결정 및 권고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다. 일몰 대상 시책 (안 제6조)
- 라.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- 마.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및 관리감독(안 제10조 및 안 제11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 실효성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판단됨
-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 “시책 등”과 “일몰”의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함.
 - 안 제5조에서는 금천구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고,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함.
 - 안 제6조에서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몰 대상 검토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함.
 - 안 제11조에서는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관리감독과 금천구의회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구의회 제출하도록 규정함.

-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,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 또는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일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